

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5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: 남진삼, 박춘희, 김성기 의원

1. 제안이유

-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- (기존) 전월세 보증금 → (변경) 주거자금
- 지원범위 확대
 - (기존)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 - (확대)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
- 지원금액 확대
 - (기존)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
 - (확대) 대출잔액의 3퍼센트, 대출잔액 1억원 한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주거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2. ~ 2026. 2. 24.(13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**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**”를 “**평창군 청년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**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**전월세 보증금**”을 “**주거자금**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**전월세 보증금**”을 “**주거자금**”으로, “**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**”를 “**주택을 매입(신축 포함)하거나 전·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**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**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**)”을 “(**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**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전월세 보증금**”을 “**주거자금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**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**”을 “**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**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임대차계약서상 주소**”를 “**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임대주택**”을 “**주택**”으로 한다.

가. 전·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: 무주택자일 것

나. 주택 매입(신축 포함) 대출이자의 경우: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
제6조제3호 중 “전세자금 대출사업 및”을 “매입자금·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임대차”를 “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”로 한다.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,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되었거나 신청 접수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</u></p>	<p><u>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<u>전월세 보증금</u>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주거자금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</u>”란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<u>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</u>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거자금</u> ----- ----- <u>주택을 매입(신축 포함)하거나 전·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<u>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</u>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<u>전월세 보증금</u>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<u>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</u>) --- ----- ----- <u>주거</u> <u>자금</u> ----- -----.</p>

제5조(지원대상)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

<신 설>

<신 설>

2. 평창군에 주소(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

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, 임대주택의 면적, 대출금액 상한,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- 1. 2. (생략)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
제5조(지원대상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거주자이며 다음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-----

가. 전·월세 임차보증금 대출
이자의 경우: 무주택자일 것

나. 주택 매입(신축 포함) 대출
이자의 경우: 해당 주택 외에
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
않을 것

2. -----
--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
약서상 주소-----

② -----
----- 주택-----
-----.

제6조(지원 제외 대상) ----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
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사업 및
월세 지원 대상자

4. 2층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
계약을 체결한 경우

5. 6. (생략)

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
원금은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
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
연 1회 일시 지급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----- 매입자금 · 전세자금 대
출사업 또는 ---

4. ----- 임대차 계
약 또는 매매 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
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
센트,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
서 연 1회 지원한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3. ~ 7. (생략)

<주거기본법>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
- 제7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,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470